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목 차>

- 1.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성자	이름	최상아
	담당부서 (과)	중소금융과		직급	5급
	국장	윤창호		연락처	02-2100-2993
	과장	신진창		이메일	choisa@korea.kr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축은행 부실여신 및 금융사고 방지		
	2.규제조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2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3.위임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의6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7.7.28.~9.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대출모집 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령상 제재 근거가 미흡 -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 부실방지 등에 한계 -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공시 의무가 없음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심사시 원칙·방법·절차 등 여신업무기준의 세부 내용 규정 ○ 임직원의 사기·횡령 등 방지대책, 과거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방지대책, 자체점검·평가계획 등 저축은행이 정하여야 하는 금융사고 방지대책의 주요 내용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상호저축은행(79개사)		
	9.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관리기준에 관한 법령상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안으로 저축은행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 일정 규모이상의 금융사고 발생을 보고사유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하는데 있어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이상(회수예상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감독원장이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직접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2 (여신운용 원칙) ① 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 차주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통한 적정한 여신의 공급
3. 여신 실행 이후 여신자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용도의 유용 방지
4.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

제40조의2 (여신업무 기준)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
----- 신용리스크-----

2. -----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
----- 심사 및 분석 -----
3. 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 여신실행 이후 차주-----
----- 사후 점검 ----

치

5. 산업별, 고객그룹별 등으로 여
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
중 현상의 방지

② (생략)

<신설>

--

5. ----- 여신운용-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3 (금융사고 예방대책) 상
호저축은행은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6제4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
기·횡령·배임·절도·금
품수수 등 범죄협의를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 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
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
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
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평가 등 본·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
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
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
차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
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
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
사고 예방대책

제40조의3 (생략)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 공시 전에 그 내용을 감독원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⑥ (생략)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② (생략)

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
를 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
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의4 (현행 제40조의3과 같음)

제42조(경영공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다만, 법 제10조의
2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과 같음)

제46조(경영개선권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는 -----

-----.

④감독원장이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I.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저축은행의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대출모집 과정에서의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법령상 제재 근거가 미흡
-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 부실방지 등에 한계
-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가 없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금융위 보고 대상인 금융사고의 기준(손실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을 마련
- (선택 근거) 현행 저축은행의 여신심사·사후관리 기준은 감독규정상 권고사항으로, 부실방지 등에 한계
- 또한,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 보고 의무가 없는 바, 금융사고 발생 예방 및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를 의무화 할 필요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관리기준에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준, 금융사고 예방 관련 의무 명시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 마련 필요성에 동의	특이사항 없음
금융회사 등	입법예고로 의견 수렴	

3. 기대 효과

-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규제목적)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
- (규제수단) 은행법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보고 의무는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부실대출 방지는 입법 추진 중인 사항으로 타 업권 대비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움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타법사례

-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가 이미 규정*되어 있음

* 은행법 제3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 또한, 은행법 개정안('16.10.21.입법예고)에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반영하여 추진 중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저축은행은 여신관리 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사고를 보고하는 규제를 충분히 준수 가능하며,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가능

○ 규제 차등화 방안

- 여신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이 포함된 위험관리기준 준수 및 금융사고 보고 의무는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는 부적합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보고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행정적으로 집행하는데 문제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저축은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예금인출에 대한 보고의무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하고 있어 금융사고 보고의무를 추가하여도 규제를 집행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7.5월까지 금융감독원과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및 금융사고 보고의무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반영

2. 향후 평가계획

-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 등을 검토할 예정

3. 종합결론

- 부실대출 방지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기준의 규정 근거 및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 저축은행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대규모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